

<산업기술혁신평가단 자격요건>

1. 산업계(기업,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)
 - 가. 박사학위 소지자
 - 나. 석사(학사)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(7년) 이상 경력자
 - 다.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
 - 라. 기술사 소지자

2. 학계
 - 가.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

3. 연구계
 - 가. 박사학위 소지자
 - 나. 석사(학사)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(7년) 이상 경력자

4. 공무원
 - 가.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

5.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